

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1조제1호 및 제2호 중 “「민법」 제379조에 규정된 법정이율”을 각각 “「국세기본법 시행규칙」 제19조의3에 따른 이자율”로 한다.

별표 1 제9호 중 “유독물질”을 “인체급성유해성물질, 제2의2호의 인체만성유해성물질, 제2의3호의 생태유해성물질, 제3호의 허가물질, 제4호의 제한물질, 제5호의 금지물질, 제6호의 사고대비물질을”로 한다.

별표 2 제3호 중 “혈액·체액·분비물·배설물”을 “혈액이 함유되지 않은 체액·분비물·객담, 혈액·체액·분비물·객담·배설물 등”으로 한다.

별표 3 제3호카목을 삭제하고, 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타. 선별시설(분리선별, 비중차선별, 부유선별, 풍력선별, 광학선별 등의 기계적 방법 등으로 「폐기물관리법」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게 선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)

별표 5의3 비고 1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비고

1. 최초 적합성확인 유효기간 기산일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

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한다.

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날	최초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 기산일
2008년 이전의 매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	2020년 7월 1일
2008년 이전의 매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	2020년의 허가받은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 첫째 달 1일
2009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	2021년의 허가받은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 첫째 달 1일
2014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	2022년의 허가받은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 첫째 달 1일
2019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	2023년의 허가받은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 첫째 달 1일
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	2024년의 허가받은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 첫째 달 1일
2024년 1월 1일 이후	당해연도 허가받은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 첫째 달 1일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별표 1 제9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반환기준에 관한 적용례) 제3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사용종료 또는 폐쇄되는 매립시설에 반환되는 사후관리이행보증금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1조(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반환기준) 법 제51조제4항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연도별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	제31조(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반환기준) ----- ----- -----.
1. 사후관리등의 업무의 전부를 이행한 경우 해당 연도의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으로 예치한 금액에 「민법」 제379조에 규정된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더한 금액	1. ----- ----- ----- 「국세기본법 시행규칙」 제19조의3에 따른 <u>이자율</u> -----
2. 사후관리등의 업무의 일부를 이행한 경우 해당 연도의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으로 예치한 금액에 환경부장관이 결정한 사후관리등의 이행률을 곱한 금액에 「민법」 제379조에 규정된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더한 금액	2. ----- ----- ----- ----- 「국세기본법 시행규칙」 제19조의3에 따른 <u>이자율</u> -----